Ⅲ 보험산업의 참여에 따른 쟁점 및 대책

■ **(품질유지 우려)** 보험회사가 전문적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한 서비스 품질에 비교해서 품질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.

○ **(보험회사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)** 보험회사는 의사,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있어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여 품질의 유지가 가능함.

⇨ **보완대책: (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 제고)** 경쟁시장체계에서는 낮은 품질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은 도태되기 마련이므로 다양한 기관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의 품질제고 노력이 필요함.

■ **(영리추구)**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속성상 영리성 추구로 인하여 이익이 되는 건강생활서비스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.

○ **(보험회사는 영리추구 동기가 약함)** 타 서비스기관은 동 서비스 제공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인 반면,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을 유지·개선하려는 유인이 강하므로 동 서비스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동기가 약함.

⇨ **보완대책: (필수 서비스 규정을 통한 보완)** 필수 서비스의 제공을 규정하는 등의 정책으로 영리성 추구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.

■ **(대기업의 시장지배 우려)** 보험회사가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건강생활서비스업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음.

○ **(보험회사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 복리증진에 기여)** 경쟁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최대의 복리를 누리게 됨. 보험회사가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복리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
○ 독과점시장의 경우 소비자의 복리는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가 '독과점 금지에 관한 법규'임.

⇨ **보완대책: (시장독과점 방지 규정)** 동 법안은 '독과점 금지에 관한 법률' 과 법리적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기업의 시장독과점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.

■ **(개인정보누출 우려)** 보험회사가 동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보험판매 등 타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.

○ **(개인정보의 누출을 차단하는 정책 대안 마련 필요)** 보험산업이 건강생활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를 허용하되 정보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⇨ **보완대책: (목적 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 부가)** 진입을 허용하되 보험회사는 **자회사**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하고,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인정보 교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음.

* 모회사와는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함과 동시에, 자회사의 전산망을 모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,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인력교류를 최소화하는 등의 규정을 둠.

〈그림 Ⅲ-1〉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건강생활서비스 공급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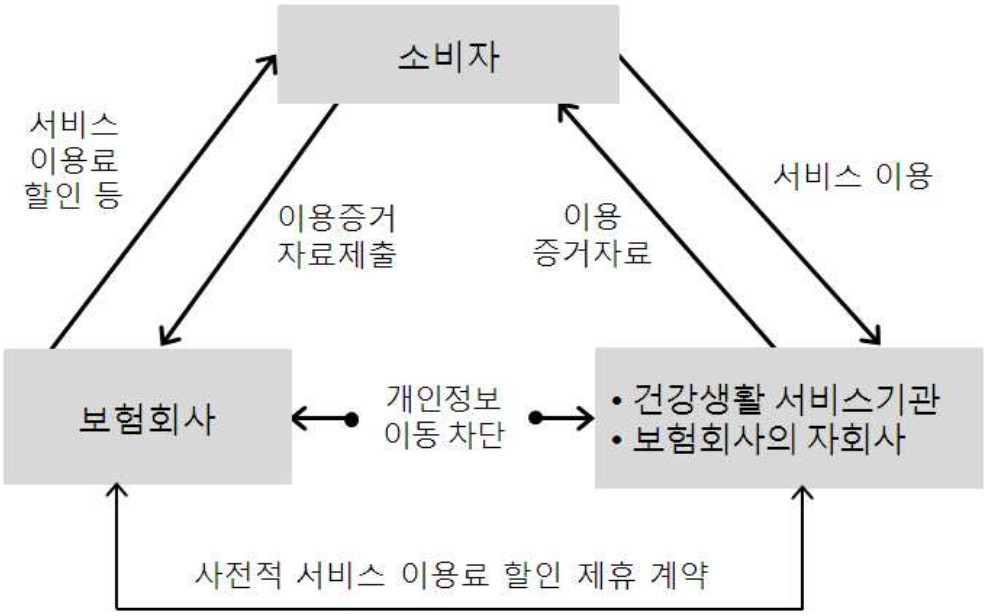

※ **(자회사를 통한 참여방안)**

1) 보험회사는 동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가입자에게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

2) 보험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근거를 보험회사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면,

3) 보험회사는 이용여부만 알고 질병여부 등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험판매 등에 활용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.

※ **(자회사에 대한 법적 검토)**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통해 건강생활서비스를 자회사 업무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함.

- 보험회사가 특정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, 신고를 해야 함(보험업법 §115).
- 건강 · 장묘 · 장기간병 · 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 · 분석 · 조언 업무 등은 신고로써 승인에 갈음함.

○ 미국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공급 혹은 자회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지주회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음.

※ **미국**은 자유시장체계(free market system)이어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의료서비스, 건강관리서비스 등 모든 사업 분야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- 모든 미국회사의 경우 Federal Law가 아닌 State Law에 적용을 받는데, State Law에 의하면 General Business Corporation(보험회사, 자회사 등 모두 포함)은 특별한 면허(special license) 없이 모든 Business Activity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- 특정 회사가 의료서비스,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영위할지의 여부는 해당 회사의 정관에 의해 규정될 수 있지만 정관은 이사회를 열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함.
- 따라서 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,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인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법은 없음.

(미국 시그나사 Chief Legal Counsel Johan)

※ **일본 보험회사의 자회사**가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① 단체계약 상대방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업무(보험업법 제106조 제2항 2호,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2 제1항), ②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 업무, 신체장애자 복지 업무(동 시행규칙 제56조의 2 제2항 6호), ③ **건강유지 및 증진 시설, 온천시설**(동 제2항 7호), ④ 건강, 복지, 의료에 관한 조사, 분석, 조언 업무(동 제2항 9호)가 포함됨.

※ 일본 **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**가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함(보험업법 제271조 22 제1항).

- 예: 동경해상홀딩스는 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인 동경해상일동메디컬서비스(TMS: Tokio Marine & Nichido Medical Service Co.)를 「일반사업회사」로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두고 있음. TMS는 舊동경해상보험회사의 자회사였음.